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폐지〉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38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폐지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6. 30.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성요건과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구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도 등 피해호소 및 부패 및 비위 제보 등 정당한 공익제보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문제를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구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유엔(UN) 자유

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삭제 및 제70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1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검토의견

-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사실적시 명예훼손죄)¹⁾,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허위사실 명예훼손죄)²⁾.

○ 또한, 「형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³⁾.

○ 한편,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⁵⁾.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의 반복·재생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체계>

구분		구성요건	법정형
형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제1항)	공연히 <u>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자 명예훼손 (제308조)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u>사자</u> 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u> 공연히 <u>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u>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정 보 통 신 망 법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u>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u>거짓의 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5)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런데 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심리적 위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문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건전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 또는 축소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⁶⁾.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여 사실의 공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되는 경우에는 훼손된 개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관 9인 중 5인의 의견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⁷⁾.
- 이에 따르면 개인의 외적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움에도 사실적시의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6) 조서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018.3.29.

7) 2021.2.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전과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형법」 제310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

○ 둘째, 현행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 규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특칙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경과를 반영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모두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에 대한 개정 없이 현행법상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만을 폐지할 경우 「형법」과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음.

8)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형법 제307조제1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치되는 점을 고려해 형법 개정 논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